

영등포구의회
제20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8. 3. 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42호로 2018년 2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임원, 단원
등에게 재난 관련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삭제
(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 없이 조례안에 단장, 임원, 단원에 대한 교육 의무를 규정한 내용은 상위법에 벗어난 조항으로 삭제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 하고자 제출된 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임원, 단원 등에게 재난 관련 전문교육 및 방재교육을 매년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단서 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 정비 하였으며

- 기타 제명 및 일부 조문은 한글맞춤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함.
-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차원에서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써 개정을 우리구에 요청해 온 사항으로 상위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 즉 지역자율방재단원에 교육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 정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